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0
----------	-----

2023년 3월 6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성흠제 의원(찬성자 10명)
- 나. 제안일 : 2023년 2월 6일
- 다. 회부일 : 2023년 2월 9일
- 라. 상정일 :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3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흠제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지하 시설물(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에 폭우 등에 대비한 안전 시설물(차수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필요설치 조항 신설(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지하철역사·지하상가 등 지하공공보도시설¹⁾에 필요한 침수방지 시설²⁾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 2월 6일 성흠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충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2) 침수방지 시설에는 출입구 방지턱, 물막이판(모래주머니 포함), 역류방지밸브 등이 있음(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8조,제10조,제11조)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적용받고,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따로 국토교통부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게 한 바³⁾,

현행 조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6호)(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운데,

지하공공보도시설 규칙에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과 피해가 커지고 있고, '22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역·강남터미널·영등포역 지하도상가 등에 침수피해⁵⁾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 지하 시설물에 집중호우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보호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제10조제7호)에서는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제한적으로 침수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복층구조를 포함한 전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신설규정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5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검토보고서 붙임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에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침수방지 시설의 체계적 설치·관리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서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5) '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상가 피해 사례

강남역 : 출입구 빗물 유입(2개소), 출입구 주변 벽체 및 천정누수(2개소)

강남터미널 : 출입구 빗물 유입(1개소),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빗물유입(각 1개소) 출입구 주변 벽체 및 천정누수(4개소), 바닥유도 등 누전(1개소)

영등포역 : 출입구 빗물 유입(1개소), 에스컬레이터 빗물유입(1개소) 출입구 주변 벽체, 천정누수(3개소)

<p>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p> <p><신 설></p>	<p>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지하공공보도 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 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① ----- ----- ----- -----.</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70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3년 3월 6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규정을 체계화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적용하는 침수방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7호 삭제).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에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서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p> <p><신 설></p>	<p>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p> <p>①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